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

미취업 청년의 선제적 발굴·접촉·취업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희망하는 대학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모집 공고 주요 내용(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선정규모	▸ 전체 10개교 내외
선정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 우수 대학 우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총 사업기간 5년, 다만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 운영비 6억원(100% 국고 지원) - 기본위탁비(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접수기간 접수방법	▸ '26. 1. 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 → 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II.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모집 공고 세부 내용

- **(사업목적)**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접촉하여 회복·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이행 촉진
- **(사업방식)** 대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설치·운영
- **(선정규모)** 전체 10개교 내외
- **(선정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정) 및 성과 우수 대학 우대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미취업 청년 발굴·접촉 및 회복·취업 지원 역량을 갖춘 있는 대학
 -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 외에 본교 캠퍼스는 별도 신청 불가하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제2, 제3 캠퍼스 중심의 사업 운영 가능(예시: 학교본부가 있는 제1캠퍼스에 보건의료계열 등이 집중 소재하여 사업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최근 3년 내 사업성과저조를 사유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중단 조치를 받은 대학

□ **(사업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 2월

* 학교당 기본 5년 지원하되,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변동가능

□ **(지원내용)** 대학당 사업비 6억원 지원(100% 국고 지원)

* 1개교당 지원목표: 1,500명(지역청년 750명 이상) 필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선정 취소·지원 중단될 수 있음
- 2개 이상 대학의 공동(컨소시엄) 참여·운영 제한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시 대학이 해당 민간기관에 사업을 일괄하여 재위탁하는 방식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간전문기관은 다음의 자격을 갖출 것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 단, 민간전문기관 대표자(법인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신청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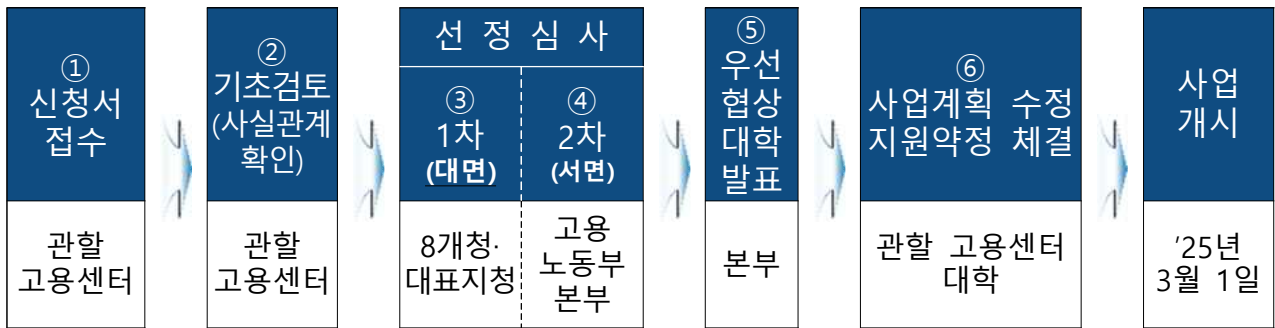
□ **(신청기한·접수)** '26.1.30(금) 17:00까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시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
 - ② 사업계획서
 - ③ 예산집행계획서
 - ④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⑤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심사절차·일정)** 기초검토 및 1~2차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발표



- 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되, 우편은 1.30.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② 관할 고용센터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필요시 현장실사)
- ③ 1차 심사: 대면심사 방식(PT 발표는 지양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인터뷰 실시)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내외 구성(위원장 호선)
- ④ 2차 심사: 1차 심사 추천의견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사업계획 등 종합선정심사*
 - * 1차 심사 최저기준(가점 제외 100점 중 70점) 통과 시에 한함
- ⑤ 우선협상 대학교 발표(2월 20일 예정, 변동 가능)
- ⑥ 우선협상대학과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계획 조정하여 약정 체결
 - ※ 일정 변동 가능

※ 사학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가급적 심사 시 제외

- **(문의)**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담당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김형우 사무관 ☎ 044-202-7636
 변지영 주무관 ☎ 044-202-7567

- <붙임1>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선정기준
- <붙임2>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예산 활용범위
- <붙임3>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목록
- <붙임4> 관련 서식

붙임 1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선정기준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미취업 청년 발굴·접촉 인프라 구축 (25)	인력 (10)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확보 방안의 적절성 · 전문인력 확보 계획 등이 적정한가?
	시설 (10)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공간 확보 방안 · 직원의 근무장소, 서비스 공간 등은 적절하게 구비되었는가? · 공간 활용계획은 각종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기존 사업성과 (5)	■ 유사 정부지원사업 수행 성과 · 미취업 청년 취업역량 지원 관련 정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최근 3년간) · 유사사업 참여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거나 수상경력이 있는가?
서비스 제공 계획 (65)	미취업 청년 발굴체계 및 외부기관 협업계획 (25점)	■ 미취업 청년 발굴 체계 · 미취업 청년 발굴·접촉(outreach) 방안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마련되었는가? · 미취업 청년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가? ■ 외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방안 · 미취업 청년 발굴·접촉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업·연계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25점)	■ 미취업 청년 특화 지원 체계 적절성 · 미취업 청년의 심리·정서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은 적절하게 마련되었는가? · 서비스 제공 계획은 참여자별 심리·취업준비도·취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기획되었는가? ■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가?
	사후관리 (15점)	■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가? · 경력초기 적응지원 및 퇴사 시 재도전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은 마련되었는가?
서비스 확산 의지 (10)	홍보 (10)	■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계획 · 보다 많은 미취업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효과적인 홍보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사업비 세부내역

구분		예산 세부내역
기본위탁비	인건비	총 사업비 중 5억 4천만원 ※ 인건비는 기본위탁비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프로그램비	
운영경비		총 사업비 중 6천만원

□ 사업비 세부 활용 가능 내역(예시)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기본 위탁비	인건비	○ 전문 컨설턴트 및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법정 수당 등 포함) - 미취업 청년 발굴·접촉 및 서비스 제공 등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 직업상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기업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자 등 활용 가능 - 행정 지원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프로그램비	○ 미취업 청년 발굴·접촉을 위한 제반 비용 - 심리상담, 역량강화 앱/플랫폼 바우처 등 - 오프라인 행사 운영비 등 ○ 프로그램 운영비 - 미취업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관련 제반 비용 - 비대면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관련 제반비용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교재비, 운영실비 등 - 개별 프로그램의 민간전문기관 위탁 비용 집행 가능 * 단, 프로그램 등 사업은 가급적 대학 직접 운영 권장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 컨설턴트 등 역량강화 교육 -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비 ○ 사업·프로그램 홍보비 - 사업 소개 및 프로그램 정보가 포함된 현수막·포스터·리플렛·책자, 홈페이지 구축·개선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 심리·정서 회복캠프, 취업캠프, 기업 및 직무설명회, 채용박람회, 각종 경진대회 운영비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 비대면(SMS, 알림톡 등) 홍보비 - 사업 성과 개선 및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운영비	○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비용 등(운영경비, 소모품비 등) - 사무용품 구입, 출장비, 위원수당 지급, 기타 운영경비 등 - 업무추진비는 운영경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컨소시엄기관 운영·관리비

붙임 3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4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민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22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교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재능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 운영 신청서

기 관 현 황	대 학 명				
	대학 소재지				
	대 표 자 (총 장)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졸업생 수	2024	
				2025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E-mail	
	학 제	☐ 일반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컨소시엄 기관명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2026년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 운영대학 선정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학교 총장 (인)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붙임 : 관련 사업 수행실적					

【붙임】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및 실적
2023				
2024				
2025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를 기재(단위: 천원)

*** 사업내용 및 실적 :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계량 지표로 기재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_____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명	직위	자격 및 경력사항(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초 정보사항 기재하여 별도 제출

2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3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등 첨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계획서(요약본)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최대 2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음

항목		내용
미취업 청년 발굴·접촉 인프라 구축	인력	(맑은고딕, 글자크기 10, 줄간격 120, 장평 90, 자간 -5, 문단위 4, 문단아래 0)
	시설	
	기존 사업 성과	
서비스 제공 계획	미취업 청년 발굴체계 및 외부기관 협업계획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사후관리	
서비스 확산 의지		
기타(가점 등 필요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계획서

-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25.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필요시 초과 가능
- ※ 증빙서류의 분량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
- ※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작성 및 서식은 변경 가능

I. 대학 내 취업지원 관련 현황

① 진로·취업지원 관련 교내 부서·기관 현황

명칭	소속기관	주요업무	설치일	설치근거	인원

<대학 조직도(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업무 관련)>



② 취업지원 관련 대학의 재정배분/활용 현황(인건비, 사업비 등)

(단위: 명, 백만원)

명칭	소속기관	인원	인건비총액	사업비 총액	비고

③ 대학 취업지원부서(인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 내 위상, 센터장의 지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행정직	명	전문인력*	명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학위	관련 자격증 (진로취업지원 관련만 기재)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재	
'25년도 예 산	대 학 총예산 (A)	백 만원	취업지원 부서 예산 (B)	백 만원	비율 (B/A)	%
운영계획	※ 민간컨설턴트 투입에 따른 기존 취업지원부서 근무인원 정(현)원 임의 조정 방지대책,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소정의 경력(취업관련 업무 평균 3년) 혹은 자격증(직업상담사 등)을 가지고 취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Ⅱ. 사업추진계획('26.3월 ~ '27.2월)

※ 공고문·사업개요 및 '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26.3월 부터 '27.2월까지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목차 등은 변경 가능

① 미취업 청년 발굴·접촉 인프라 구축(25)

①-1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활용(10)

①-2 운영 시설 및 공간 구축 계획(10)

①-3 기존 사업 성과(5)

② 서비스 제공 계획(65)

②-1 미취업 청년 발굴체계 및 외부기관 협업 계획(25)

②-2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계획(25)

②-3 사후관리(15)

③ 서비스 확산 의지(10)

④ 연간 추진 일정

※ 프로그램의 추진 일정을 가급적 월별 추진계획으로 작성하나, 분기별 작성 가능

⑤ 기대효과

예 산 집 행 계 획 서

① 총사업비: 6억원 기준으로 작성

②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계				
기본 위탁비	인건비	소계		
	프로그램비	소계		
운영경비		소계		